

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



구 미 시

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5. 2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봉곡 및 도량지역의 대단위 주거지구 형성으로 인구 및 소방대상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공공시설물(청사, 관사 등)축조가 가능함으로 공유재산에 봉곡119안전센터 신축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
 - 위 치 : 구미시 봉곡동 174-5번지
 - 규 모 : 대지 1,396.4㎡ 건축연면적 726㎡(지상2층)
 - 신축시기 : 2015. 8월경
 - 사 업 비 : 18억원 (도비)

3. 관계 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제11호

위치도



지적도



《관 계 법 령》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

제13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구거(구거)·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

제9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08.4.18, 2008.12.31>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